

클럽 재정건전화 준수 세칙



한국프로축구연맹

목 차

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제1조. 목적 | 3 |
| 제2조. 표준예산 등의 작성 | 3 |
| 제2조의1. 재무자료 계정과목의 증빙 | 4 |
| 제3조. 예산 심사 | 4 |
| 제4조. 전기 심사 | 5 |
| 제5조. 추가 예산 심사 | 5 |

클럽 재정건전화 준수 세칙

제1조 목적

본 세칙은 '재정건전화 규정'(이하 '규정')의 시행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한다.

제2조 표준예산 등의 작성

- ① 표준예산의 예상 표준이익은 0 이상이어야 한다.
- ② 표준예산의 선수비용은 총수익의 70%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- ③ 표준예산의 계정과목별 정의는 연맹이 제공한 양식 내 기재되어 있는 바를 따른다.
- ④ 예산 심사를 위해 제출하는 표준예산에는 전기 예상 이익잉여금 또는 예상 미처리결손금으로 예상되는 표준이익잉여금을 기재한다.
- ⑤ 전기 심사 이후 클럽의 표준예산에는 전기 감사보고서상 이익잉여금 또는 미처리결손금을 다음 각 호에 따라 포함하여야 한다.
 - 1) 제4항의 반영 금액 대비 금액이 증가되는 경우(또는 미처리결손금이 감소되는 경우) 차액을 전기 이익잉여금/미처리결손금에 가산한다.
 - 2) 제4항의 반영 금액 대비 금액이 감소되는 경우(또는 미처리결손금이 증가되는 경우) 차액을 전기 이익잉여금/미처리결손금에 감산한다. 단, 감산에 따라 예상 표준이익이 음수가 되는 경우, 0 미만의 예상 표준이익 금액을 클럽의 선수비용에서 감산한다.
- ⑥ 연맹은 재무위원회의 일임 하에 제5항에 따라 클럽의 당기 표준예산 내 전기 이익잉여금/미처리결손금을 최신화하여 클럽에 새로운 선수비용 상한선을 지정한다.
- ⑦ 완전자본잠식 클럽이 제출하는 당기 표준예산은 클럽이 당기에 제출하는 재무개선안의 사업계획서를 반영하여야 한다.
- ⑧ 완전자본잠식 클럽이 제출하는 재무개선안의 사업계획서에는 클럽의 향후 2년 간 재무상태표, 손익계산서 및 현금흐름 개선 방안을 구체적으로 서술하여야 한다.
- ⑨ 표준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은 전기 감사보고서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과 일치하여야 한다.
- ⑩ 표준손익계산서상 선수비용은 전기 개인별 원천징수영수증을 반영한 선수비용결산과 일치하여야 한다.
- ⑪ 선수비용결산은 선수별 각 선수비용 항목의 금액을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.
- ⑫ 예상 현금출자액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만 표준예산 내 특수관계자 광고수익에 반영한다.
 - 1) 해당 시즌의 클럽 운영비용으로 사용하는 경우
 - 2) 이사회를 통해 증자와 주식배정이 확정된 경우

제2조의1 재무자료 계정과목의 증빙

- ① 클럽은 당기 표준예산 제출 시, 기재된 금액을 증빙하기 위하여 계정과목별 다음의 증빙 자료 첨부 또는 부연 설명을 기재하여야 한다.
 - 1) 특수관계자 광고수익 : 특수관계자로부터 수령한 특수관계자 광고수익 승인 자료 또는 지급 증빙 자료 첨부(불가할 경우 연맹은 다른 방법으로 검증)
 - 2) 상기 항목 외 수익 : 대회별 예상 순위 및 수령 상금 수익 기재
 - 3) 영업외수익 : 산출액 부연 설명 기재
 - 4) 본 조에서 설명되지 않은 수익 계정과목 중 클럽의 최근 3시즌 해당 계정과목의 평균 결산 금액 대비 증가하였을 경우 사유 기재
 - 5) 본 조에서 설명되지 않은 비용 계정과목 중 클럽의 최근 3시즌 해당 계정과목의 평균 결산 금액 대비 감소하였을 경우 사유 기재
- ② 클럽은 전기 표준손익계산서 제출 시, 기재된 금액을 증빙하기 위하여 계정과목별 다음의 증빙 자료 첨부 또는 부연 설명을 기재하여야 한다.
 - 1) 특수관계자 광고수익 : 특수관계자 광고수익 지급 증빙 자료 첨부
 - 2) 이적료수익 : 선수별 금액 기재 및 이적/임대합의서 첨부
 - 3) 영업외수익 : 산출액 부연 설명 기재
 - 4) 본 조에서 설명되지 않은 수익 계정과목 중 클럽의 최근 3시즌 해당 계정과목의 평균 결산 금액 대비 증가하였을 경우 사유 기재
 - 5) 본 조에서 설명되지 않은 비용 계정과목 중 클럽의 최근 3시즌 해당 계정과목의 평균 결산 금액 대비 감소하였을 경우 사유 기재

제3조 예산 심사

- ① 클럽은 규정 제9조 제1항에서 정한 자료를 1월 10일까지 연맹에 제출한다. 다만, 규정 제19조 2항 3호를 적용 받는 클럽은 11월 30일까지 연맹에 제출한다.
- ② 연맹은 아래 각 호의 경우 클럽에 보충 또는 설명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.
 - 1) 표준예산과 최근 3년간의 감사보고서 간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
 - 2) 표준예산과 함께 제출된 증빙 자료 간 차이가 있는 경우
 - 3) 표준예산과 함께 제출된 재무개선안 간 차이가 있는 경우
 - 4) 표준손익계산서와 최근 3년간의 감사보고서 간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
 - 5) 표준손익계산서와 함께 제출된 증빙 자료 간 차이가 있는 경우
 - 6) 향후 2년에 대한 추정 손익계산서 또는 사업계획서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
 - 7) 기타 이유로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
- ③ 연맹이 제2항 단서에 따라 보충 또는 설명 자료를 요구한 경우 클럽은 그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.
- ④ 연맹은 클럽이 제출한 자료와 이에 관한 보충, 설명 자료 등을 수신한 후 필요 시 클럽이 제출한 자료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재무위원회에 회부한다.
- ⑤ 연맹은 재무위원회를 소집하고, 재무위원회는 각 자료를 심의하여 모든 클럽에 대하여 규정

제9조 제2항의 결정을 한다.

- ⑥ 연맹이 제4항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할 경우 관련 클럽에 서면으로 재무위원회 개최 일시 및 장소를 고지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다.
- ⑦ 재무위원회가 클럽에 표준예산 또는 재무개선안의 수정을 요구한 경우 클럽은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이를 수정하여 재무위원회에 재제출하여야 한다.
- ⑧ 재무위원회는 제7항에 따라 클럽이 제출한 각 자료를 심의하여 규정 제9조 제2항의 결정을 한다. 단, 재무위원회가 수정을 요구하는 경우 이후 절차는 제7항을 준용한다.
- ⑨ 표준예산 및 재무개선안이 승인된 이후라도 추후 부적절성이 발견될 경우에는 재무위원회가 이를 재심의할 수 있다.

제4조 전기 심사

- ① 클럽은 규정 제10조 제1항에서 정한 자료를 3월 31일까지 연맹에 제출한다.
- ② 연맹은 아래 각 호의 경우 클럽에 보충 또는 설명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.
 - 1) 클럽의 손익분기점 지표를 준수하지 못한 경우
 - 2) 클럽의 전기 선수비용이 전기 감사보고서상 영업수익의 70%를 초과한 경우
 - 3) 클럽이 제출한 전기 표준손익계산서와 당기 표준예산 간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
 - 4) 완전자본잠식 클럽이 제출한 재무개선안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
 - 5) 클럽이 제출한 전기 선수비용결산이 전기 최종 제출된 당기 선수비용현황과 차이가 있는 경우
 - 6) 기타 이유로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
- ③ 연맹이 제2항에 따라 소명을 요구한 경우 클럽은 그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.
- ④ 연맹은 클럽이 제출한 자료와 이에 관한 보충, 설명 자료 등을 수신한 후 규정 위반이 의심되는 클럽이 제출한 자료를 연맹 의견서와 함께 이전에 재무위원회에 회부한다.
- ⑤ 연맹은 재무위원회를 소집하고, 재무위원회는 각 자료를 심의하여 규정 제10조 제2항의 결정을 한다.
- ⑥ 연맹이 제4항에 따라 의견서와 함께 클럽이 제출한 자료를 재무위원회로 회부할 경우 관련 클럽에 서면으로 재무위원회 개최 일시 및 장소를 고지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다.

제5조 추가 예산 심사

- ① 클럽은 규정 제11조 제1항에서 정한 자료를 연맹에 제출한다.
- ② 추가 예산 심사 중 클럽이 제출하는 당기 표준예산이 예산 심사 중 재무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당기 표준예산과 변경된 경우 변경된 항목에 대한 명확한 설명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.
- ③ 연맹은 아래 각 호의 경우 클럽에 보충 또는 설명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.

- 1) 표준예산과 최근 3년간의 감사보고서 간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
 - 2) 표준예산과 함께 제출된 증빙 자료 간 차이가 있는 경우
 - 3) 표준예산과 예산 심사 중 제출된 재무개선안 간 차이가 있는 경우
 - 4) 기타 이유로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
- ④ 연맹이 제3항 단서에 따라 보충 또는 설명 자료를 요구한 경우 클럽은 그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.
- ⑤ 연맹은 모든 클럽의 당기 표준예산을 검토하여 특정 계정과목의 금액 변경을 사유와 함께 요청할 수 있다.
- ⑥ 제5항에 따라 연맹으로부터 당기 표준예산 변경 요청을 받은 클럽은 수용 및 당기 표준예산 제출 또는 거부 및 사유 제출을 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⑦ 연맹은 클럽이 제출한 자료와 이에 관한 보충, 설명 자료 등을 수신한 후 필요 시 클럽이 제출한 자료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재무위원회에 회부한다.
- ⑧ 연맹은 재무위원회를 소집하고, 재무위원회는 각 자료를 심의하여 규정 제11조 제2항의 결정을 한다.
- ⑨ 연맹이 제7항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할 경우 관련 클럽에 서면으로 재무위원회 개최 일시 및 장소를 고지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다.
- ⑩ 재무위원회가 클럽에 표준예산의 수정을 요구한 경우 클럽은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이를 수정하여 재무위원회에 재제출하여야 하며 재무위원회가 해당 클럽의 표준예산을 승인하기 전 선수 등록, 탈퇴, 계약 갱신을 할 수 없다.
- ⑪ 재무위원회는 제10항에 따라 클럽이 제출한 각 자료를 심의하여 규정 제11조 제2항의 결정을 한다. 단, 재무위원회가 수정을 요구하는 경우 이후 절차는 제10항을 준용한다.
- ⑫ 표준예산이 승인된 이후라도 추후 부적절성이 발견될 경우에는 재무위원회가 이를 재심의할 수 있다.



개정내역

| | |
|------------|----|
| 2023/01/16 | 개정 |
| 2024/01/15 | 개정 |
| 2024/11/29 | 개정 |



한국프로축구연맹

www.kleague.com